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55208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6. 4. 21.

판결 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758,758원 및 그 중 203,208,274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404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758,758원 및 그 중 203,208,274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 1) 원고는 2010. 6.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7.까지, 대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강동구청지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4차례 갱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원금 199,750,000원, 보증기한 2015. 6.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10.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그 후 피고 A은 이자를 연체하여 2015. 3. 25.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7. 15. 우리은행에 203,208,2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63,324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A이 지급해야할

위약금은 187,160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203,758,758원(= 대위변제금 203,208,274원 + 채권보전비용 363,324원 + 위약금 187,1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상태

1) 피고 C는 2014. 11. 26.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04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47,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203,758,758원, 서울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원, 엔에이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300,000원,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0원 등 합계 354,058,75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A,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758,758원(= 대위변제금 203,208,274원 + 채권보전비용 363,324원 + 위약금 187,160원) 및 그 중 203,208,2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9.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애착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계약금, 담보대출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2014. 11. 2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 피고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6.자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유지현

판사장선중

별지